

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이유서

의안번호	169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3. 22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개 정 이 유

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구성범위가 현실과 맞지 아니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당연직위원의 구성 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제3조(위원회 구성) 제1항 1호 당연직위원 중 “총무국장”을 삭제하고 토지평가와 관련이 있는 토지보상업무의 소관과장인 “건설과장”으로 추가함.

3. 관 련 법 규
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